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10. 17.(금) 09:4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4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 (2014-46-16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은 어제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일부 이견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오늘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보고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제 논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약간의 이견이 있으시지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 같고, 김재홍 위원님께서서는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고 논의를 더 해 보았는데 혹시 의견을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단 어제 반대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종의 의견수렴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혼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광고 문제에 한해서 우리가 제3기 정책과제를 발표했을 때에 가장 많이 이의제기를 한 쪽, 그쪽 당사자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기구의 선의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전문위원회가 그대로 구성이 된다면 법적 근거를 가진 전문위원회인데 유료방송 쪽, 종편과 위성방송과 IPTV, SO 이런 유료방송 쪽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쪽입니다. 불만이 많은 쪽 의견을 좀 더 자세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선의의 정책당국의 노력이 나중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구성방법이 선례가 되거나 관행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유료방송 쪽에 그 4개의 범주가 지상파와 똑같은 등급으로 범주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대표성이나 그쪽에 자리를 더 많이 배정하거나 하는 일을 선례로 삼아서 관행화되지 않기를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 쪽에 더 많은 기회를 주면서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방송광고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반대했지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가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의 설치 의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쪽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듣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고, 다만 앞으로 전문위원회 운영이나 또는 다른 전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원래 주장하셨던 대로 균형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구성이 선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어제도 논의했지만 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놓고 위원회 내·외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정책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건을 올릴 때 저희 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렸다는 표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2페이지 구성과 관련해서 보시면 어제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방송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방송사업자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붙임> 시행령 제5조제3항을 보시면 ‘전문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 이런 논의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페이지의 구성 둘째 줄에 ‘추천을 받아’ 다음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추가하면 되겠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저는 그 표현보다는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밖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안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수정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제가 어제 말씀 드렸지만 저희 다섯 분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정책결정, 제도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설치법이나 다른 개별법에서 법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든 저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가 자꾸 이렇게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립구조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이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진데 자꾸 숫자도 홀수로 하고 또 어느 단체 추천 몇 명, 어느 단체 추천 몇 명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가 숫자를 사실상 처음부터 8명 이런 것도 저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몇 명 중 몇 명은 찬성, 몇 명은 반대 이런 굉장히 산술적이고 단순하고 그런 것에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위원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분은 왜 그런 의견을 내는지 그 배경, 논리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를 한다면 또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저희의 방안을 찾으려면 되는 것이지, 어느 이슈에 대해서 자꾸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저는 그런 것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논의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혹시 법률자문을 구할 때도 변호사든 로펌이든 몇 개를 자문했더니 그중에서 몇 개는 가능하고 몇 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법률자문 결과, 가능하다면 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느냐? 저는 그 '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 로직을 보고 판례, 사례, 다른 케이스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그냥 그렇게 몇 개 물었더니 '몇 개 법인은 찬성이고 몇 개 법인은 반대다' 저는 그런 식의 의견수렴이나 논의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전문위원회 관련해서 운영방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문위원회 전체 위원회로서의 의견이 무엇이다, 이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이 중에서 어느 특정한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전문위원회에서 나중에 광고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모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여덟 분 중에서 몇 분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성, 몇 분은 반대,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까지 이기주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저희 규정을 보면 시행령 제5조제4항에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중장기 과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단기과제에 대한 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2년으로 한다면 통상 위촉하고 2년 동안은 그 전문위원회가 존속하고 위원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실이나 국회 지적사항을 보면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꼭 2년으로 한다, 이것이 2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이내에 미션이 종료되면 위원회도 운영을 중지하고 해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전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2년 내내 다 필요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간을 더 단축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소위 방송광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과제 실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그 전문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과제를 부여해서 계속해 갈 것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성을 새롭게 하거나 해산하고 새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확대 개편하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층의 의견을 주로 듣고 하느냐, 이해당사자 쪽 의견을 들어서 하느냐 이 문제는 서로 대립되는 견해도 아니고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 집행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전문가들 견해를 듣고 또 직접 작업도 하는 것인데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특히 불만이 많을 때에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청취를..., 우리가 지난번에 개인정보노출 사건이나 또 통신시장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제재할 때 불려서 의견을 듣는 것처럼 이해당사자들,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이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바로 입안단계는 지났다, 우리가 제3기 정책과제를 발표할 때 이미 입안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단계, 결정을 앞두고 바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불만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결정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등한 구조, 구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는 전

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나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집행과 집행결과에 나타난 영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는 특히 시장과 국민 여론층의 평가,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문위원회 구성을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정책 입안단계는 지나서 이미 결정단계를 앞두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기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회가 보다 더, 어떤 세 대결보다는 논리를 가지고, 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아까 고삼석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2페이지 구성 부분에서 ‘방송사업자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6.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5분 폐회 】